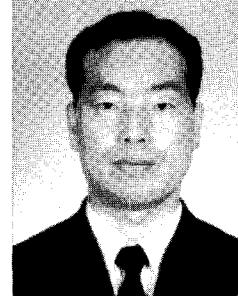


特別企劃

製造物 責任法(PL법)과 골판지포장 製造者 責任論 解說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박희주

목 차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2. 제조물책임이 제기된 이유
3.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
4. 골판지포장과 제조물책임
5. 골판지포장업계의 대응전략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과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제조물의 생산을 유도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2. 제조물책임이 제기된 이유

산업화 이전에는 매수인(소비자)이 제품의 성질·성능

등을 직접 파악하여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결합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매수인이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를 부담하였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는 생산의 기계화와 유통의 복잡화로 매수인이 제품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수인 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배상능력도 있는 매도인(판매자)에게 결합제품에 의한 손해를 부담시켰다.

그러나 현대의 자동화·계열화에 의한 대량생산·대량판매와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특성으로 하는 고도산업사회에서 매도인에게만 결합제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결합제품을 설계·제조하고 또한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광고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의 판매로 이익을 얻고 있는 제조자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결합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제조물책임이 탄생하게 되었다.

3.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

1)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래에는 주로 「민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비자와 제조자의 사이처럼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이용되었다. 이에 의하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제조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제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위법성」이라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과실」 등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판매자와 같이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책임이 이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바, 매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매수인이 「판매자가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매도인은 「자신에게 고의 ·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인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에서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매도인은 「자신에게 고의 ·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

앞에서 보았듯이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종래 피해자가 직접 제조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에 의하는 것이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PL법상의 제조물책임의 기본적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가 민법에서는 제조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식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PL법에서는 제품의 결함이라는 제품의 객관적 상태만을 입증하면 된다.

둘째, 품질관리를 엄격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제조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되고,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PL법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되고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의 차이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책임의 성격	계약책임	계약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 필요 與否	과실 필요	과실 불필요	과실 불필요	과실 필요	과실 불필요
손해배상범위	모든 손해	제품 자체	보증 내용	모든 손해	확대 손해

4. 골판지포장과 제조물책임

1) 골판지포장의 제조물성 여부

골판지포장은 제조 · 가공된 동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PL법상의 제조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골판지포장은 그 용도에 따라 그 자체가 완성품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완성품의 부품 또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골판지포장 제조자는 완성품 제조자 또는 부품 · 원재료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결함이 생긴 경우, 즉 골판지포장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자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판지포장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면한다.

골판지포장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완성품을 포장하는 포장서비스는 일종의 용역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완성품 제조자로부터 포장업무를 위탁받은 포장업자는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포장업자는 완성품 제조자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을 가능

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골판지포장의 결함 유무

결함은 제품의 단순한 품질의 문제가 아니고, 인적손해나 다른 제품에 대한 물적손해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제품의 안전상의 하자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결함의 유무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이 경우의 고려요소로는 「제품의 성질」,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형태」, 「제품을 유통시킨 시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결함의 유형으로서는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불량한 원료가 혼입된 경우,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경우,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등은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부적절한 재료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설계, 안전법규·기준에 대한 위반 등은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고라벨·취급설명서의 불구비, 과대광고 등의 부실표시, 용도·강도·내구성에 관한 보증의 위반 등은 표시상의 경고에 해당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결함을 정의하고 결함을 유형화할 수 있어도, 과연 어떠한 경우에 골판지포장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포장에 관련된 제조물책임사례에서도 골판지포장등 종이류 포장에 대한 사례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로 골판지포장의 결함성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골판지포장에서는 결함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예컨대 골판지상자의 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제조물책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게 된다.

3) 골판지포장의 결함과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

여기에서는 우선 골판지상자가 그 피포장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파손된 경우 골판지상자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피포장물은 골판지상자와 일체를 구성하여 거래된다. 따라서 피포장물의

파손은 확대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골판지상자 제조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피포장물의 파손으로 사람의 생명·신체나 다른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골판지상자 제조자는 부품의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TV의 포장에 사용된 골판지상자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TV가 상자를 뚫고 나와 TV를 운반하고 있던 사람의 발에 떨어지거나 다른 제품위에 떨어지는 경우, 물론 TV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질 것이지만, 결함 있는 골판지상자를 제조한 자도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제조된 골판지상자 전부가 TV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할 것이며, 일부만 그러한 경우에는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그리고 골판지상자에 용도나 강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할 것이다.

5. 골판지포장업계의 대응전략

1) 설계의 적정화 대책

제품의 안전은 제조사측의 설계·제조단계에서 가능한 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이하게 경고라벨이나 취급설명서에 의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골판지상자를 설계할 때 피포장물의 성질과 특성, 포장재료의 성질과 특성, 유통환경 및 사용조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조의 적정화 대책

제조상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와 검사를 충실히 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검사단계에서는 제품의 종류, 제품의 판매처별(국내·해외, 한냉지·온난지, 개인·회사 등), 사용장소, 사용방법 등에 따라 검사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규격외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리 또는 수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업계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포장 제한기준이나 포장규격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3) 표시의 적정화 대책

제조자는 안전성의 관점에서, 각 제품에 대해 표시해야 할 사항의 우선도·내용 및 표시의 방법(문자의 크기, 그림·마크 및 색의 사용, 표시할 장소 등)을 검토하여, 그 적정화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골판지상자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 강도, 규격, 취급, 보관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고표시의 분야 등에서의 통일적인 표시의 도입에 대해서도 국제적 동향이나 국가의 관계 법령에 유의하면서, 업계에서 적극적인 검토·개정을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제품의 단점을 표시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는 안된다. 위험한 사용이나 가능한 오사용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오히려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시는 필요가 없다.

4) PL방어대책

앞에서 언급한 것은 PL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 PL방어대책은 PL사고후의 대책을 말한다. 이러한 PL방어대책으로는 PL보험의 가입, 설계도·계약서·취급설명서 등 문서의 관리·보관, 소비자불만처리창구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원 고 모 집

골판지 포장·물류의 경영, 기술, 관리 종합지인 본『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귀하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1. 원고내용

- 골판지포장·물류 정책제언
- 골판지포장·물류 경영·기술
- 경영혁신 운동 수기
- 본지 도덕양양 캠페인 덕목
- 논설, 엣세이, 콘트, 시·시조, 일기, 기타

3. 제출처

격월간『골판지포장·물류』편집실
(근무처, 직위 명기, 사진 1매 등봉)

2. 원고매수

시·조와는 200자 원고지 7매 단위로 7매,
14매, 21매로 함.

4. 원고료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